

# 고용기준(EMPLOYMENT STANDARDS)

## 휴가 제도

###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개인비상 휴가, 가족의료 휴가 및 재향군인 휴가

ESA 라고 불리는 고용기준법 2000(Employment Standards Act, 2000)은 온타리오 주 내의 공정한 직장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ESA 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개인비상 휴가, 가족의료 휴가 및 재향군인 휴가를 낼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육아 휴가

##### 출산 휴가

출산 휴가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최고 17 주까지 쉴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상근직이건 비상근직이건, 영구직이건 계약직이건 출산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출산예정일로부터 최소한 13 주 전에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 육아 휴가

새로 부모가 된 사람(친부모, 양부모, 또는 친부모의 친척으로서 그 자녀를 친자처럼 취급할 사람)은 자녀가 태어났거나 자녀의 양육을 맨먼저 맡게 되었을 때 일자리를 잃지 않고 무급 휴가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상근직이건 비상근직이건, 영구직이건 계약직이건 육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단, 이 혜택을 누리려면 휴가 시작일로부터 최소한 13 주 전에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출산 휴가를 낸 고용인은 보통 출산 휴가가 끝난 다음날부터 최고 35 주 동안 육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를 내지 않은 부모와 다른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거나 자녀의 양육을 맨먼저 맡게 된 날로부터 52 주 안에 최고 37 주 동안 육아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부모 양자가 동시에 휴가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주에 대한 통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산 또는 육아 휴가 시작일 2 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휴가 종료일을 변경할 경우에는 4 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 출산 또는 육아 휴가는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며 몇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비상 휴가

개인비상 휴가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연간 최고 10 일까지 쉴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이 혜택을 누리려면 해당 직장의 종업원수가 50 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휴가는 개인적인 질병, 상해, 또는 긴급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의 사망, 질병, 상해, 긴급의료 또는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의붓부모, 양부모, 자녀, 의붓자녀, 양자녀, 조부모, 의붓조부모, 손자손녀 또는 의붓손자손녀
- 자녀의 배우자
- 형제자매
- 부양하고 있는 친척

**고용주에 대한 통보:**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되도록 빨리 개인비상 휴가를 내겠다고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 10 일간의 개인비상 휴가는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고용주는 하루가 채 안 되는 개인비상 휴가를 하루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료 휴가

가족의료 휴가는 일자리를 잃지 않고 26 주 동안 최고 8 주까지 쉴 수 있는 무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26 주 안에 사망할 위험이 높은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고용인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을 돌보거나 부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세 및 사망 위험은 자격 있는 의료종사자가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연방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 EI) 간병급여 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가족의료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간병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 제출한 의료확인서 사본을 가족의료 휴가 신청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근직이건 비상근직이건, 영구직이건 계약직이건 가족의료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동일인을 돌보기 위해 두 명 이상의 고용인이 가족의료 휴가를 낼 자격이 있다면 8 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대한 통보:**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되도록 빨리 가족의료 휴가를 내겠다고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 8 주 동안의 개인비상 휴가는 한 번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재향군인 휴가

재향군인으로서 해외 작전에 배치되었거나, 긴급상황 또는 그 여파(수색 및 구출 작전 포함)의 처리를 위해 현재 지원을 제공하고 있거나 향후 제공할 캐나다 내에서의 작전에 배치된 고용인은 ESA에 의거하여 해당 작전에 참가하는 기간 동안 무급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외에서의 작전의 경우, 해당 작전과 관련하여 캐나다군이 요구하는 배치 전후의 활동에 필요한 시간도 휴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재향군인 휴가를 내려면 직장 근무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향군인은 휴가 시작일 및 종료일로부터 적당한 시일 안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재향군인 휴가는 요건에 따라 고용주에게 통보했고 2007년 12월 3일 이후에 작전에 배치된 재향군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휴가를 낸 고용인은 직장 내 직책이 아직 남아 있을 경우 동일 직책에 복귀할 수 있으며, 직책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와 대등한 직책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의 직장 복귀를 연기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인의 고용과 관련된 급여혜택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인의 직장 복귀일이 연장되는 기간 동안 고용인이 그러한 급여혜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 연공과 각종 혜택

**연공:** 위 네 가지 휴가 동안에도 근무기간 및 고용기간에 대한 연공과 크레디트가 계속 쌓입니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개인비상 휴가, 또는 가족의료 휴가 동안에도 고용주는 대부분의 급여혜택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연금, 생명보험 및 확장의료보험, 사고사 보험, 치과 의료보험 등).  
**연방 고용보험 급여:** 출산급여, 육아급여, 간병급여 등은 연방 고용보험에 의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국 고용보험 안내 전화(무료전화 1-800-206-7218)로 문의하십시오.

## 휴가를 낸다고 해고될 수 있나?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출산 휴가, 육아 휴가, 개인비상 휴가, 가족의료 휴가 및 재향군인 휴가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이 이 네 가지 휴가 중 어느 것이든지 사용하거나 사용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고용인을 위협하거나, 해고하거나, 징직시키거나, 감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노동부(Ministry of Labour)에 연락하십시오.

## 노동부에 연락하십시오

고용기준 안내센터로 연락하십시오 **416-326-7160**, 무료전화 **1-800-531-5551**, 청각장애인용 TTY 전화 **1-866-567-8893**. 영어나 프랑스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는 사람을 동반하십시오.

노동부 웹사이트 [www.labour.gov.on.ca](http://www.labour.gov.on.ca)에서 고용기준(Employment Standards) 페이지에 들어가면 ESA의 보호를 받는 권리에 대한 상세 정보가 나와 있는 온라인 안내서가 있습니다.

*이 정보는 공공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확한 최신 정보를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정보에 따라 행동을 취하기 전에 되도록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Queen's Printer for Ontario, 2008  
Printed in Canada  
ISBN 1-4249-1192-3 (Print)  
ISBN 1-4249-1193-1 (HTML)  
ISBN 1-4249-1194-X (PDF)

Korean  
"Leaves of Absence" is also available in English, French and other languages.  
« Congés autorisés » est également disponible en anglais, en français et en d'autres langues.